

학생활동지원위원회 규정

제1조 (명칭) 이 위원회는 성결대학교 학생활동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위원회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체의 지도교수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께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임기)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 및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2. 총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
3.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 (회의) 회의소집은 통상 3일전에 통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조 (개회 및 결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에서 관장하며,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7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학생활동지원위원회 규정(8-6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